#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69 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김성원·고동진·최수진

김선교 • 임이자 • 김소희

박충권 · 정희용 · 조승환

김종양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출·퇴근 시간대 교통안전지도, 거리질서홍보 활동,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경찰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왔음.

이러한 모범운전자에 대해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·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 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 또한, 일반적인 자원봉 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 이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(안 제3조).
- 나. 시·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.
- 다. 중앙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(안 제6조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 등의 보험가입, 복장·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.
- 마.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 차량에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바.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와 중앙회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 조).

#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·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증진하고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모범운전자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2. "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"란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- 제3조(법인) 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  - ②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- ③ 중앙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4조(정관)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명칭
  - 2. 사무소의 소재지
  - 3. 사업에 관한 사항
  - 4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
  - 5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 - 6. 자산 · 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
  - 7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8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 - 9. 그 밖에 중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5조(조직 및 구성) ① 중앙회의 건전한 발전과 모범운전자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모범운전자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에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다.
  - ② 모범운전자회에는 회장, 총무 및 회원을 둔다.
  - ③ 중앙회·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(이하 "중앙회등"이라 한다)의 조직,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다.

- 제6조(사업) 중앙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 - 1.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활동
  - 2.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
  - 3.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
  - 4. 교통행정 캠페인 행사
  - 5.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7조(경비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·장비의 구입, 교육·훈련,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등이 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복장·장비 등) ① 모범운전자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때에는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모범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  - ② 모범운전자는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모 범운전자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④ 모범운전자의 신분증, 복장,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중앙회등의 지도·감독) ① 교통질서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, 시·도경찰청장은 연합회,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·감독한다.
  - ② 경찰청장 및 시·도경찰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0조(포상)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은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와 중앙회등 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제11조(금지의무) ① 모범운전자는 중앙회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
  - 2. 영리목적으로 중앙회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
  - 3. 소송·분쟁·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  - 4. 그 밖에 중앙회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- ② 모범운전자와 중앙회등(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)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(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라 신고한 모범운전자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3조(벌칙)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.
- 제14조(과대료)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로 본다.
-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3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